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8
----------	-----

제출년월일 : 2025.11.1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공유재산 운영의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대상 조문 개정(안 제5조제1항제6호)
- 나. 대부료의 요율 정비(안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7항)
- 다. 1급 관사의 폐지, 관사운영비 지원 폐지 등(안 제51조, 제51조의2, 제5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10. 17. ~ 2025. 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520호, 회계과-21046(2025. 10. 17.)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예산과-16345(2025. 10. 21.)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16345(2025. 10. 21.)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없음[가족복지과-38214(2025. 10. 20.)호]
 - 5) 법제심사 : 적정[기획예산과-17637(2025. 11. 10.)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17900(2025. 11. 13.)호]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사업목적·용도·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 군수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제2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⑦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에 따른다.

제50조(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에서 “관사“란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삭제>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의사 숙소 및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의2의 제목을 “1급 관사의 면적기준” 을 “관사의 면적기준” 으로 바꾸고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하여 관사의 기준 면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52조(사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군 소유의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일부(장기수선충당금 등)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과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의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심의회의 업무)</p> <p>① (생략)</p> <p>1. ~ 5. (생략)</p> <p>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취득·처분에 관한 재심의(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p> <p>①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 6. (생략)</p> <p><신설></p> <p>⑤ ~ ⑥ (생략)</p> <p><신설></p>	<p>제5조(심의회의 업무)</p> <p>① (현행과 같음)</p> <p>1.~ 5. (현행과 같음)</p> <p>6. ----- ----- 사업목적·용도·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는 ----- ----- -----.</p> <p>제28조(대부료의 요율)</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군수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육성을 위해 설치한 공유재산을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 하는 경우</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⑦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조례에 따른다.</p>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군수·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군수 관사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의사 숙소 및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의2(1급 관사의 면적기준) 관사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하여 1급 관사의 기준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독립형 관사 : 116제곱미터
2.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생략)

제50조(정의) -----
부군수 또는 그 밖에 소속공무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임차 포함)하는 -----
-----.

제51조(관사의 구분) (현행과 같음)

1. <삭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51조의2(관사의 면적기준) ----

관사의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1. <삭제>
2. <삭제>

제52조(사용허가) -----

2급 -----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현행과 같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정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9.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가 사용하는 3급 관사의 경우 후생복지 차원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공작물 -----

2. 건물유지 수선비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
4. 커튼, 냉장고, TV, 세탁기 등 기본 생활 물품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군 소유의 아파트 관사일 경우 공동관리비 일부(장기수선충당금 등)
9. 관사 사용자가 없는 경우 공공요금 및 기타 관리비 등

② -----
----- 관사의 -----

----- 비용과 보일러운영비, 전기요금, 전화·통신요금, 수도요금 등의 경비를 -----
-----.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47조 관련)

현행	개정안
<p>1. 본청</p> <p>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p> <p>나. 부속공간 면적</p> <p>다. 설비관계 면적</p> <p>라. 공용면적</p> <p>〈신설〉</p>	<p>1. 본청</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p>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재정국 회계과장 손영미
연락처	(033) 330 - 2123